

# 학교급식분야 업무 정상화 추진 요청

## I 추진 개요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라 급식소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업무 부담 발생
- 일부 영양(교)사의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및 급식소 환경개선사업(예시/환기설비 개선 사업) 담당 거부로 조리종사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렵고 업무를 미루어 교직원 간 갈등 발생

### □ 추진 근거

- 「학교급식법」 제12조(위생·안전관리) 및 동법 시행령 제8조(영양교사의 직무), 동법 시행규칙 제6조(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 기준 등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(관리감독자)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
-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-7165(2020.12.24.) 「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」
- 「국민신문고」 묻고 답하기 회신 자료<강교노 질의 회신>

### □ 추진 방향

- 업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갈등하지 않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원칙과 상식에 근거하여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풍토 조성

## II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정상화 추진

### □ 경과

-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 후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영양교사의 역할에 대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 발생
- 교육부 차원에서 위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여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시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8조(영양교사의 직무)에 근거하여 영양교사의 역할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시
  -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-7165(2020.12.24.) 「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」 공문 참조
- 위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, 영양(교)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고 영양(교)사는 보호 대상이지 관리자가 아니라며 업무를 회피하고, 심지어 교육행정실의 업무라고 주장하여 논란 가중
- 학교 현장에서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시 책임과 의무가 없는 교육행정실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부당업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 발생

### □ 검토사항

- 교육부에서 제시한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8조(영양교사의 직무)에 따른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영양(교)사의 책무 이행 방안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(관리감독자)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에 따른 관리감독자(학교장)의 역할
- 「국민신문고」 묻고 답하기 회신 내용과 같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
 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답변과 같이 현행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없음
- 영양(교)사의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거부로 교육행정실에서 부당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시급

## □ 개선 요구사항

- 관리감독자의 책무를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없기에 교육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부당업무 지시 금지
  - 교육행정실 업무분장표에서 ‘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’ 문구 삭제
-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, 교육부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과 영양교사가 협의하여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
  - 산업안전보건 업무 중 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교육행정실로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유의
  -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구하는 등 즉각·적극 대응 예정

## □ 제안사항

- 교육행정실 지방공무원은 학교장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총괄 (문서 접수, 관련 부서에 공람, 취합 및 제출, 자료 보관 등) 및 기존 교육행정실 업무와 관련된 일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할지에 대하여 학교장과 대화와 협조

## Ⅲ 급식소 환경개선사업 정상화 추진

### □ 경과

- 조리종사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환경개선사업 추진
- 조리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추진
- 기존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중 ‘급식시설 및 안전관리(가스시설 검사 포함)’ 업무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실로 분류되어 시행

- 관련 공문 시행 이후 일부 영양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영양사가 해당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자는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전파하며 교직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

□ 검토사항

- 학교급식 관계 법령을 위반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준수 여부

**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**

21	학교급식 운영일반	급식운영계획	교무	2	
		<b>급식시설 및 안전 관리</b>	<b>행정</b>	<b>3</b>	<b>가스시설검사 포함</b>
		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	행정	3	
		학생전출입, 조·석식인원(명단)	교무	1(2)	
83	학교시설 관리	<b>학교시설관리</b>	<b>행정</b>	<b>3</b>	
		교육청발주시설공사지원	행정	3	
		에너지절약	행정	3(2)	
		교육시설재난공제업무	행정	3	

- 학교급식 관계 법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 수행 안내

< 영양교사의 법적 직무(발췌 요약) >

1.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8조(영양교사의 직무)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2. **위생·안전·작업관리** 및 검식
  4. **조리실 종사자의 지도·감독**
  5.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2. 「학교급식법」 제12조(위생·안전관리) ② 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3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6조(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 등)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은 **별표 4와 같다.**

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**[별표 4]**

**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관리기준(제6조제1항관련)**

**1. 시설관리**

**7. 안전관리**

가. 관계규정에 따른 **정기안전검사(가스·소방·전기안전,보일러·압력용기·덤웨이터 (dumbwaiter)검사 등)**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 □ 검토결과 및 요구사항

-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중 ‘급식시설 및 안전 관리’ 업무를 행정실 소관으로 지정한 사항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자체 지침이기에 **당연무효**이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
- **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급식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영양교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지시**
  - 과학실, 보건실 등 특별실에 대한 시설·환경 개선 사업은 모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듯 급식소 시설·환경 개선사업도 동일하게 추진
-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 83번과 같이 교육행정실은 학교의 일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함. 특정 용도의 시설에 대한 특수성은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가장 잘 알기에 본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본인이 직접 추진